

제 1 장 정 관

- 제 1 조 (명칭) 본 협회는 버지니아-메릴랜드 한의사협회라 칭하며 영문명은 Korean Oriental Medicine Association of Virginia-Maryland라 칭한다.
- 제 2 조 (목적) 본 협회의 목적은 협회회원의 권익향상과 전문교육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회원 간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.
- 제 3 조 (위치) 본 협회의 사무소는 메트로지역에 둔다.
- 제 4 조 (사업) 본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.
- 1) 회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제반교육
 - 2) 회원의 사업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정보교환
 - 3)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
 - 4) 한방의술의 우수성을 미국사회에 홍보
 - 5)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
- 제 5 조 (운영) 본 협회의 운영은 미국 연방법과 버지니아, 메릴랜드, 와싱턴 DC법을 준수하며 회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의하고 관례에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.

제 2 장 회 원

- 제 6 조 (회원의 자격)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- 1) 정회원은 버지니아, 메릴랜드 한의사 면허소지자에 한 한다.
 - 2)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며 협회에서 지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- 제 7 조 (회원 관리) 1)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2) 준회원에 관한 권리는 따로 정한다.
- 제 8 조 (회원 의무) 본 협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.

- 제 9 조 (회원 징계) 1) 본 협회의 회원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회원 개인의 도덕적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재적회원 3/4 이상의 동의로 징계할 수 있다.
- 2) 연회비를 일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모임에 일년 이상 단 일회도 참석하지 않는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0 조 (임원)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
- 1) 회장 1명
- 2) 부회장 1명
- 3) 총무 겸 교육위원 1명
- 5) 대외봉사 업무위원 1명
- 6) 회계 1명
- 7) 감사 1명

제 11 조 (임원의 임무)

- 1)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. 만일 회장의 사퇴, 유고시등 회장의 보궐선출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신임회장을 보궐선출하고 남은 기간동안 회장직을 맡는다.
- 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무와 상호 연락하여 일을 분담한다.
- 3) 총무는 본회의 회의기록과 보관을 유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연락을 담당하며 협회선전 및 광고를 담당한다.
- 3) 교육위원은 본 협회의 교육에 관한 모든사항을 주관한다.
- 4) 대외봉사 업무위원은 지역사회의 각종 봉사 활동과 대외업무를 총괄한다.
- 5) 회계는 본 협회의 회계기록과 보관을 유지한다. 또한 모든 금전출납을 책임 처리하고 그에 관한 모든 문서를 관리 보관한다.
- 6) 감사는 본 협회의 회무 운영사항과 회계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12월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12 조 (임원의 임기)

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인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를 임기로 한다.

제 4 장 조 직

제 13 조 (의결 기관) 본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기관을 둔다.

1) 총회

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.

2) 임시총회

회장 또는 재적 정회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
① 단, 2)항의 요구에 의한 임시 총회 소집은 소집 요구서를 접수한지 일개월을 넘을 수 없다.

②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목적인 안건 이외의 것을 처리 할 수 없다.

3) 임원회

임원회는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총회나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14 조 (안건) 총회에 제출 할 안건은 총회 개최 칠일 전까지 그 내용과 발의자의 성명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안건의 결정)

1) 모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2) 임원회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3) 본 협회는 각급 회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
제 5 장 재 정

제 16 조 (재정) 본 협회의 재정은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와 외부의 찬조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 17 조 (회계 연도)

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 18 조 (수입 및 지출)

회원의 회비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6 장 부 칙

제 19 조 (발효규정)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통과한 다음 달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20 조 (보충규정) 본 정관의 미비된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보충한다.

제 21 조 (경조사) 1) 경조사 지원은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과 비회원으로 본 협회 가입 예정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경조사를 지원한다.
본 안은 2009년 5월7일부터 시행한다.

① 개원(또는 개업)

- \$100.00 이하의 축하화환

② 청첩장을 보내 온 회원 본인의 환갑 또는 그 이상의 축하연(진갑등)

- \$100.00 이하의 축하화환

③ 청첩장을 보내 온 회원의 직계 자녀 결혼식

- \$100.00 이하의 축하화환

④ 은퇴 회원

- \$200.00 이하에 상당하는 상패 또는 기념품

⑤ 회원 본인 사망 조의금

- \$300.00 조의금과 \$100 이하의 조화

⑥ 회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사망 시

- \$100.00 이하의 조화

2) 단, 전항에 없는 경조사의 경우, 회장단에서 경조사비의 지출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사후 협회 모임에서 그 내역을 회원에게 공표한다.